
(주)세원정공 협력사 행동규범 (책임성명)
(Supplier Code of Conduct)

[개정이력]

제정권자	초도제정	개정일자	개정내용
대표이사	2024. 03. 25	2024. 03. 25	신설

관리부서 : 전략구매/자재과

주식회사 세 원 정 공

세원정공 협력사 행동규범 (책임성명)

제정 2024.03.25. / 시행 2024.04.01.

제 1 장 개요

1.1 행동규범의 목적

주식회사 세원정공(이하 "회사"라고 한다)은 회사의 윤리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규범을 제정합니다.

회사는 협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사가 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시스템, 환경, 윤리, 노동과 인권,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촉구합니다.

1.2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 및 범위

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가 본 규범의 적용 대상이다. 본 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해당 지역의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3 협력사 책임과 역할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 과정에 있어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공급망 전반에 있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에게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회사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및 실사할 수 있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계획 수립 및 실행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경영시스템

2.1 기업 성명서 공시

- ① 협력사는 본 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본 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하고,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2.2 담당자 선임

- 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3 리스크 점검

-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4 교육 및 소통

- ① 협력사는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2.5 정보 기록 관리

협력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6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협력사는 임직원이 환경, 윤리,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인지한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와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등의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2.7 규범 준수와 협력사의 책임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 점검 혹은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 조치의 노력을 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에게 본 규칙을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관련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인권 및 노동

3.1 인도적 대우 (괴롭힘 금지)

- ①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 대한 성적 학대, 체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폭언, 불합리한 제재 등 가혹하거나 괴롭힘 행위와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③ 협력사는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절차와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

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3.2 근로시간의 관리

- ① 협력사는 관련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보다 높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3.2 임금과 복리후생

- ①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와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4대보험 및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급여/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해당 국적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4 차별금지 및 다양성(포용성) 존중

- ①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대우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고용관행(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연수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에 있어서 국적, 출신 지역,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및 출산, 종교,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사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장애인, 노약자, 여성근로자, 인종)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5 아동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15세 미만의 아동 또는 고용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노동 형태로도 착취하지 않습니다.
- ②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으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및 자기계발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③ 실습 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6 강제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노동 등)
- ② 협력사는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7 결사의 자유 보장

-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 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이나 보복, 협박, 괴롭힘,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회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 4 장 안전 및 보건

4.1 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 준수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각 사업장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지역 언어로 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

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사업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여 조직, 계획, 실행,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4.3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 ①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법규 및 자체적으로 수립된 매뉴얼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성에 대한 점검, 평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인 안전장치, 방호장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 보호기능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보호장비를 사용, 유지관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4.4 위험성 평가 (안전 진단)

- ①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임직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작업 방법의 변경 또는 공정의 변경, 신규설치 시에는 해당 범위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의 안전측

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개인 안전 보호구를 제공,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5 비상상황 대응

-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상황의 발생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피로, 유도등, 화재감지기 및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4.6 사고 관리

-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7 작업환경의 유해인자 관리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 등의 직업병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선하여 작업중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기숙사 등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안전 표지, 조명, 냉난방,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 등의 청결 및 안전보건에 대한 유지관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4.8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배치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4.9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정책/계획 등에 따라, 임직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임직원이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제 5 장 환경

5.1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 ① 협력사는 해당국가의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5.2 환경오염 예방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① 협력사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공정개선, 원료대체, 자원보존,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3 수자원 관리

- 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배출되는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엄격한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5.4 대기오염물질 관리

- ① 협력사는 사업장 및 사업장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기가스, 분진, 송음, 부식성 가스, 오존층 파괴 물질, 폐수 및 폐기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측정/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해야 하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엄격한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5.5 폐기물 관리

-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6 화학물질 관리

- ① 협력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7 생물다양성 보호 및 동물복지

- ① 협력사는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동물 보호를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재지 내의 법령과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6 장 기업윤리

6.1 투명경영 및 반부패 (부당이익 금지)

- ① 협력사는 당사 거래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하며, 사업장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횡령, 알선,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6.2 이해상충 방지

- ① 협력사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3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에 대해 담합 및 반독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와 같은 불합리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6.4 위조부품 방지

- 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5 정보 보호

- 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제 3자에게 유출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6.6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보유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7 신원보호와 보복 금지

- ① 협력사는 정책 및 규정 위반 등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야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부당 전보, 직무변경, 인사평가 등에서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

6.8 책임있는 자재구매

- 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 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 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외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9 정보공개

협력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회계, 노무, 안전보건, 환경, 경영활동, 지배구조, ESG 성과,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 산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부 칙

이 정책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원정공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세원정공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본 규범') 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본 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세원정공' (이하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귀사가 지정한 자가 당사의 본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현장 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사의 요청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세원 계열회사 통합 홈페이지(www.se-won.com)에 게시된 본 규범이 귀사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5. 당사는 본 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귀사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6.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에 관한 문서와 기록을 귀사가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본 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귀사에 통지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세원정공 귀중